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을 각각 폐지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는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철도 여객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에 증원한 철도경찰 정원 18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을 평가대상 정원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해안·하천 및 간척”을 “해안 및 간척”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의2 중 “항공, 하천 및 단지조성 등”을 “항공 및 단지 조성 등”으로 하고, 같은항 제18호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 제6호 중 “국도 및 하천의”를 “국도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의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를 “국도의 유지·건설”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87명”을 “86명”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34명”을 “30명”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008”을 “9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98”을 “983”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9”를 “95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696”을 “2,5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96”을 “2,5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87”을 “2,534”로 한다.

별표 4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하 안전 관리 (지방국토관리청)	19명 (5급 2명, 6급 7명, 7급 10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2)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방국토관리청)	36명 (5급 3명, 6급 9명, 7급 24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3)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31명 (7급 3명, 8급 17명, 9급 11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4)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5) 철도경찰 (철도특별사업경찰대)	1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2023년 12월 31일 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하천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68명(4급 5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3명, 6급 52명, 7급 42명, 8급 33명, 9급 10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자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49조제4항, 제7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제3항, 제81조, 제82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5조의2제2항, 제10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u>해안·하천 및 간척</u> ,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직무) ----- ----- ----- ----- <u>해안 및 간척</u> , ----- ----- -----.
제11조(국토도시실) ① ~ ② (생략) ③국토도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5의2. 남북 육상, <u>항공, 하천 및 단지조성 등</u>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관리 5의3. ~ 17. (생략) 18. <u>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u> 19. <u>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이수(利水)·환경·문화·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u> 19의2. <u>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u>	제11조(국토도시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u>항공 및 단지 조성 등</u> ----- ----- 5의3. ~ 17. (현행과 같음) <u><삭 제></u>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9의3. 하천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의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0. ~ 56. (생략)	20. ~ 56.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3조(직무)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6. 국도의 ----- -----
7. 하천공사의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삭 제>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소관사무 중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소속으로 국토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를 둔다.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 ① ----- ----- 국도의 유지·건설-----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	② ----- ----- ----- -----.

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86명을-----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② ----- ----- ----- -----. ----- 30명을----- ----- ----- ----- ----- -----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
를 그 상한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08</u>	<u>993</u>	-15
·	·	·	
·	·	·	
일반직 계	<u>998</u>	<u>983</u>	-1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69</u>	<u>954</u>	-15
·	·	·	

[별표 3]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6</u>	<u>2,543</u>	-153
일반직 계	<u>2,696</u>	<u>2,543</u>	-15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87</u>	<u>2,534</u>	-153
·	·	·	